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19학년도 약학대학 총 정원 1,693명 중 320명을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에 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이 약학대학에 편 입학하고자 하는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합헌이라고 선고하였다.

국내에서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뒤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의 조정계획은 남성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 국내 약학대학에 입학 가능한 총 정원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 조정계획으로 인하여 약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고등교육법령에 의하면 약학대학의 정원은 대학이 스스로 정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이는 국가의 보건 정책, 보건의료 환경변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학대학의 정원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의 적절한 공급과 원활하고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여자대학들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를 양성해왔는 바, 약사의 적절한 공급과 원활하고 적절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자대학의 약학대학들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경험과 자산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청구인은 여자대학 약학대학이 오랜 기간 동안 약학대학을 운영하며 축적해 온 경험·자산을 고려하여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그대로 동결한 것으로서, 이는 약사의 적절한 공급과 원활하고 적절한 보건서비스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계획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한편, 여자대학이 아닌 다른 약학대학의 경우에도 재적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정계획으로 인한 불이익은 청구인의 주장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입학 과정에서 각 약학대학별로 중시되는 선발요소가 다르고 약학대학 편입학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여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자대학 약학대학이나 지방인재 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여자대학의 약학대학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원이 청구인의 약학대학 입학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헌법재판관 중 일부는 조정계획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 ② 국내에서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학대학원에 입학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약학대학 총 정원 중 320명을 여자대학에 배정했다.
- ④ 약학사 학위를 받았다면 약사로서의 자격을 얻는다.
- ⑤ 약학대학의 편입학 과정에서 중시되는 선발요소도 조정계획에서 정한다.

2. 위 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 ② 약학대학에 복수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
- ③ 약학대학별 선발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 ④ 2019학년도 약학대학교 전체 정원은 몇 명인가?
- ⑤ 조정계획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3. ㉡에 대한 ㉠의 견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리라 생각한다.
- ② ㉠은 ㉡에 약학대학 정원을 편성한 것이 남성인 청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③ ㉠은 남성인 청구자가 ㉡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④ ㉠은 ㉡이 없더라도 남성인 청구자의 약학대학 입학가능성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 ⑤ ㉠은 ㉡에 약학대학 정원을 배정한 결정에 다양한 사회적 고려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